

제267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
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
심사보고서**



2024. 2. 5.

기획행정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73
----------	------

2024. 2. 5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4. 1. 18.
- 나. 회부일자 : 2024. 1. 25.
- 다. 상정일자 : 2024. 1. 30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김미영 의원

나. 제정이유

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. 특히, 이동노동자는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 중간 대기시간이 긴 데 반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움. 이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, 적용대상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구청장 책무 및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규정(안 제4조~안 제6조)

다.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1. 24.~2024. 1. 28.) 결과: 접수된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최미화)

○ 의안번호 제2173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」은 2024년 1월 18일 김미영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,

○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긴 데 반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어려운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이동노동자의 권리

보호와 복지증진,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조례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였음

☞ 이동노동자 :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배달원, 대리운전원, 학습지 방문강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

-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,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

-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에게 휴식 및 대기 공간 제공, 법률,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·복지서비스 안내

등을 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·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

<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>

구분	총계	서울시 운영	자치구 운영
위치	13	5	8
중구	1	1	
성동구	1		1
중랑구	2		2
도봉구	1		1
은평구	1	1	
서대문구	1		1
서초구	1	1	
마포구	2	2	
강남구	2		2
영등포구	1		1

※ 서울시 지원 자치구 운영 쉼터 : 6개소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업과 쉼터 설치 등을 통해,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코로나19이후 확장된 배달 문화로 인해 이동노동자가 증가했지만,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-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에 위반이 없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